



제438회국회(임시회)
제2차 정무위원회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자료미제출 시 이행강제금 부과 및 열람등요구 방법 개선 〉

■ 최혁진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8952호)

2026. 8.

정 무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곽 현 준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3
1. 열람등요구 방법 개선	3
2. 자료 미제출 시 이행강제금 부과	6

I. 제안경위

1. 제 안 자 : 최혁진의원 등 10인
2. 제 안 일 : 2026. 5. 13.
3. 회 부 일 : 2026. 5. 14.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디지털 플랫폼의 확산으로 개인정보의 경제적 가치가 급증함에 따라, 영리적 목적의 수집·이용 과정에서 대규모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

그러나 자료 제출 거부가 이루어지는 경우 법 위반행위에 대한 위법 사실 규명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고, 현재의 벌칙 또는 과태료의 부과만으로는 자료제출 및 검사의 실효성을 확보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한편, 회원 가입은 간소화하면서 탈퇴나 동의 철회는 복잡하게 설계하여 정보주체의 권리 행사를 사실상 방해하는 절차적 기만 행위에 대해서도 보다 적극적인 개선이 요구됨.

이에 자료제출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여 이 법 위반에 따른 보호위원회의 검사 실효성을 확보하는 한편, 정보주체의

권리 행사를 방해하는 절차적 설계를 금지함으로써 국민의 권리를 보다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38조제4항, 제63조의3 신설 등).

Ⅲ. 검토의견

1. 열람등요구 방법 개선

- 개정안은 정보주체가 “열람등요구”(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및 동의 철회, 설명 등의 요구)의 방법과 절차를 해당 개인정보의 수집 방법과 절차보다 “복잡하지” 않도록 규정하는 내용임.

현행	개정안
제38조(권리행사의 방법 및 절차) ① ~ ③ (생략) ④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가 열람등요구를 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과 절차를 마련하고, 이를 정보주체가 알 수 있도록 공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열람등요구의 방법과 절차는 해당 개인정보의 수집 방법과 절차보다 <u>어렵지</u>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⑤ (생략)	제38조(권리행사의 방법 및 절차)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 ----- ----- ----- ----- ----- <u>복잡하지</u> <u>나 어렵지</u> -----. ⑤ (현행과 같음)

- 현행법 제38조¹⁾는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의 열람, 전송, 정정 및 삭제,

1) 「개인정보 보호법」

제38조(권리행사의 방법 및 절차) ① 정보주체는 제35조에 따른 열람, 제35조의2에 따른 전송, 제36조에 따른 정정·삭제, 제37조에 따른 처리정지 및 동의 철회, 제37조의2에 따른 거부·설명 등의 요구(이하 “열람등요구”라 한다)를 문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절차에 따라 대리인에게 하게 할 수 있다.

② 만 14세 미만 아동의 법정대리인은 개인정보처리자에게 그 아동의 개인정보 열람등요구를 할 수 있다.

③ 개인정보처리자는 열람등요구를 하는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와 우송료(사본의 우송을 청구하는 경우에 한한다)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제35조의2제2항에 따른 전송 요구의 경우에는 전송을 위해 추가로 필요한 설비 등을 함께 고려하여 수수료를 산정할 수 있다.

④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가 열람등요구를 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과 절차를 마련하고, 이를 정보주

처리정지 및 동의 철회 등을 요구(이하 “열람등요구”라 함)하는 방법과 절차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4항에서는 열람등요구의 방법과 절차는 해당 개인정보의 수집 방법과 절차보다 어렵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음.

그러나, 회원 가입을 위하여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절차에 비하여 탈퇴 등을 위한 절차를 진행할 때에는 관련 메뉴에 대한 접근을 어렵게 하거나 관련 절차를 반복적으로 요구함으로써 정보주체의 정당한 권리 행사를 저해하는 사례가 많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개정안은 정보주체의 권리행사를 위한 절차를 설계함에 있어서 개인정보 수집 방법과 절차보다 “복잡하지 않게” 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정보주체의 권리행사를 보다 용이하게 하려는 취지임.

- 다만, 현행법에서도 이미 개정 취지와 유사하게, 정보주체의 열람등요구 방법과 절차를 개인정보의 수집 방법과 절차보다 “어렵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복잡성”은 관련 절차를 어렵게 하는 요소 중의 하나로 볼 수도 있으므로, “복잡성”을 별도로 추가할 실익이 있을지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해 보임.

체가 알 수 있도록 공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열람등요구의 방법과 절차는 해당 개인정보의 수집 방법과 절차보다 **어렵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3. 3. 14.>

⑤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가 열람등요구에 대한 거절 등 조치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경우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절차를 마련하고 안내하여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한국인터넷기업협회는 ‘복잡하다’는 표현은 현행법상 ‘어렵다’는 표현과 실질적으로 유사하여 개정 실익이 크지 않고, 복잡성 여부를 계량 가능한 기준으로 제시하기 어려워 법적 기준으로 설정하기에는 불명확하므로 실제 적용상 혼란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의견임.

○ 참고로 유사 입법례로는 회원 탈퇴 절차를 복잡하게 설계하여 탈퇴를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을 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²⁾이 있음.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에서는 전자상거래업자 등에 대하여, 회원가입 등의 절차보다 탈퇴, 해지 등의 절차를 복잡하게 설계하거나, 회원가입 등의 방법과 다른 방법으로만 탈퇴를 할 수 있도록 제한함으로써 탈퇴 등을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음.

2)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온라인 인터페이스 운영에 있어서 금지되는 행위) ① 전자상거래를 하는 사업자 또는 통신판매업자는 온라인 인터페이스(웹사이트 또는 모바일 앱 등의 소프트웨어로서 소비자와 사업자 사이의 매개체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운영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 3. (생략)

4. 정당한 사유 없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소비자의 구매취소, 회원탈퇴, 계약해지 등을 방해하는 행위

가. 재화등의 구매, 회원가입, 계약체결 등의 절차보다 그 취소, 탈퇴, 해지 등의 절차를 복잡하게 설계하는 방법

나. 재화등의 구매, 회원가입, 계약체결 등의 방법과는 다른 방법으로만 그 취소, 탈퇴, 해지 등을 할 수 있도록 제한하는 방법

5. 소비자가 이미 선택·결정한 내용에 관하여 그 선택·결정을 변경할 것을 팝업창 등을 통하여 반복적으로 요구하는 방법으로 소비자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방해하는 행위. 다만, 그 선택·결정의 변경을 요구할 때 소비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동안 그러한 요구를 받지 아니하도록 선택할 수 있게 한 경우는 제외한다.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에 해당하는 행위의 예방 및 소비자보호를 위하여 사업자의 자율적 준수를 유도하기 위한 지침을 관련 분야의 거래당사자, 기관 및 단체의 의견을 들어 정할 수 있다.

2. 자료 미제출 시 이행강제금 부과

☐ 개정안은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의 자료제출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임.

현행	개정안
제26조(업무위탁에 따른 개인정보의 처리 제한) ① ~ ⑦ (생략) ⑧ 수탁자에 관하여는 제15조부터 제18조까지, 제21조, 제22조, 제22조의2, 제23조, 제24조, 제24조의2, 제25조, 제25조의2, 제27조, 제28조, 제28조의2부터 제28조의5까지, 제28조의7부터 제28조의11까지, 제29조, 제30조, 제30조의2, 제31조, 제33조, 제34조, 제34조의2, 제35조, 제35조의2, 제36조, 제37조, 제37조의2, 제38조, 제59조, 제63조, 제63조의2 및 제64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개인정보처리자”는 “수탁자”로 본다.	제26조(업무위탁에 따른 개인정보의 처리 제한) ① ~ ⑦ (현행과 같음) ⑧ ----- ----- ----- ----- ----- ----- ----- ----- ----- ----- -----제63조의2, 제63조의3----- -----.
<신설>	제63조의3(이행강제금) ① 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제63조제1항에 따른 관계 물품·서류 등 자료의 제출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 그 관계 물품·서류 등 자료가 이법 위반 여부를 확인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결정으로 이행기한을 정하여 그 관계 물품·서류 등 자료의 제출을 다시 명령할 수

현행	개정안
	있으며,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이행기한이 지난 날부터 1일당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일 평균매출액의 1천분의 3의 범위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매출액이 없거나 매출액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이행기한이 지난 날부터 1일당 100만원의 범위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② 이행강제금의 부과·납부·징수·환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이행강제금의 부과·징수에 관하여는 「행정기본법」 제31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에 따른다. ④ 보호위원회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징수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청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 현행법상 각종 의무 위반에 대해서는 시정조치 명령(법 제64조), 고발 또는 징계 권고(법 제65조), 결과 공표 명령(법 제66조) 등을 할 수 있고, 금전적 제재로 과징금(법 제64조의2)이나 과태료(법 제75조)를 부과할 수 있으며, 형사처벌 규정(법 제70조부터 제74조)도 두고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에 따른 명령이나 조치를 이행하지 않거나 지연되는 경우가 있어 개정안은 그 이행을 강제하기 위한 실효적인 수단으로 이행강제금을 도입하려는 것임.

□ 이행강제금의 도입과 관련해서는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어 보임.

- 첫째, 이행강제금은 의무를 이행할 때까지 반복하여 부과할 수 있으므로 이행강제력이 크고, 위반행위별로 상한이 1천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정해져 있는 과태료와 달리 개정안에서는 일(日) 매출액 기준으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어 매출액 규모가 큰 기업에게는 그에 비례해서 부담이 커지는 구조이므로, 각종 의무에 대한 이행을 담보하는 데 실효적인 수단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다만, 이와 관련하여 한국인터넷기업협회 및 온라인쇼핑협회는 현행법상 조사 불응이나 시정조치 미이행 등에 대해서는 벌금 및 과태료 등 제재수단이 이미 존재하므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필요성도 있어 보임.

- 둘째, 현행법상 자료제출 의무 불이행에 대해서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법 위반사항을 은폐 또는 축소할 목적으로 자료제출을 거부하는 경우 등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³⁾,

개정안은 이에 더하여 자료제출 명령 불이행 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려는 것임.

이는 자료제출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처분으로서 과태료를 부과하더라도, 그 이후 지속적으로 자료제출을 미이행할 경우 추가적인 제재가 어렵다는 측면에서⁴⁾, 자료제출 이행을 담보하기 위한 실효적인 수단을 마련하려는 취지임.

다만, 이와 같이 자료제출 의무 위반 전체를 이행강제금 부과 대상으로 규정할 경우 이행강제금 부과 대상이 과도하게 확대될 가능성이 있어 보이므로, 부과 대상을 개인정보 침해사고의 원인 규명이나 피해 확산 방지 등을 목적으로 한 자료요구 등으로 한정하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어 보임.

참고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침해사고의 발생 여부 및 침해사고의 원인을 분석하고 대책을 마련하

3) 「개인정보 보호법」

제73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 3. (생략)

4. 제63조제1항(제26조제8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자료제출 요구에 대하여 법 위반 사항을 은폐 또는 축소할 목적으로 자료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의 자료를 제출한 자

5. 제63조제2항(제26조제8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출입·검사 시 자료의 은닉·폐기, 접근 거부 또는 위조·변조 등을 통하여 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제75조(과태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25. 제63조제1항(제26조제8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관계 물품·서류 등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

26. 제63조제2항(제26조제8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출입·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4) 자료제출 위반을 이유로 과태료를 추가로 부과할 수도 있으나, 현재 법령상 1회 위반시 300만원, 2회 위반시 600만원, 3회 위반시 1,000만원으로 규정되어 있는 정도임.

기 위한 자료요구에 대한 자료제출명령 불이행에 대해 이행강제금 부과 규정이 최근 신설되었음.

한편, 한국인터넷기업협회는 자료제출 지연이 불가피한 경우 및 법 위반 여부 등이 확정되지 않은 단순 혐의 단계에서도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수 있어 과도한 제재라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이에 대하여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현행법 하에서는 자료를 제출하지 않더라도 과태료만 부담하면 조사에 계속 불응할 수 있어 실질적인 자료 확보 수단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입장임. 특히 개인정보 유출사고와 같이 신속한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한 사건에서는 자료 확보 지연으로 피해 확산 방지 및 적시 조사가 어려워질 수 있으므로, 자료제출 거부 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경우 자료제출의 강제력 확보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의견임.

<자료제출 불이행 시 이행강제금 부과 입법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6조(이행강제금 등)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가 제81조제1항 제3호 또는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나 물건의 제출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 그 보고 또는 자료나 물건이 이 법 위반 여부를 확인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회의의 결정으로 이행기한을 정하여 그 보고 또는 자료나 물건의 제출을 다시 명령할 수 있으며,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이행기한이 지난 날부터 1일당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일 평균매출액의 1천분의 3의 범위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매출액이 없거나 매출액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이행기한이 지난 날부터 1일당 200만원의 범위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② 이행강제금의 부과·납부·징수 및 환급 등에 관하여는 제16조제2항부터 제4항

까지를 준용한다. <개정 2025. 1. 21.>

「전기통신사업법」

제51조의2(사실조사 자료제출명령 위반에 대한 재제출명령 및 이행강제금) 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51조제2항 각 호의 조사대상자가 제51조제5항에 따른 자료나 물건의 제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그 자료나 물건이 제50조제1항의 위반 여부를 확인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상당한 기한을 정하여 그 자료나 물건의 제출을 다시 명령(이하 이 조에서 “재제출명령”이라 한다)할 수 있다. <개정 2025. 1. 21., 2025. 10. 1.>

②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재제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출액의 1천분의 3 이내의 범위에서 하루당 금액을 정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매출액이 없거나 매출액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하루당 200만원 이내의 범위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부과대상 기간은 재제출명령에서 정한 이행기간의 종료일 다음 날부터 재제출명령을 이행하는 날까지로 한다. 이 경우 이행강제금의 부과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제출명령에서 정한 이행기간의 종료일 다음 날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④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전에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한다는 사실을 미리 문서로 알려 주어야 한다.

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재제출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한 경우에는 새로운 이행강제금의 부과를 즉시 중지하되, 명령을 이행하기 전에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징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0. 1.>

⑥ 이행강제금의 가산금에 관하여는 제53조제5항 및 제7항을 준용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이행강제금의 부과·납부 및 환급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국세기본법」

제85조의7(이행강제금) ① 관할 지방국세청장은 납세자가 세무조사 과정에서 세법상 장부등의 제출 의무를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해당 납세자에 대하여 제85조의8에 따른 이행강제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동일한 사유에 대하여 이 법 및 세법에 따른 과태료와 중복하여 부과할 수 없다.

② 관할 지방국세청장은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전에 납세자의 장부등 제출에 필요한 상당한 이행기한을 정하고, 그 기한까지 장부등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수 있음을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행기한은 통지하는 날부터 30일 이상 경과한 날로 정하여야 한다.

③ 관할 지방국세청장은 제2항에 따른 이행기한까지 장부등을 제출하지 아니한 납세자에게 이행기한이 지난 날부터 1일당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일 평균수입금액의 1천분의 3의 범위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평균수입금액이 없거나

평균수입금액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1일당 500만원의 범위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④ 관할 지방국세청장은 장부등의 제출이행을 위한 노력과 불이행의 정도·사유 또는 세무조사 결과 등을 고려하여 이행강제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금액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부과·납부·징수·환급 및 감면 절차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8조의4(침해사고의 원인 분석 등) ⑥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침해사고의 발생 여부 및 침해사고의 원인을 분석하고 대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침해사고 관련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으며, 제48조의2제7항에 따른 침해사고조사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소속 공무원 또는 제4항에 따른 민·관합동조사단에게 관계인의 사업장에 출입하여 침해사고의 발생 여부 및 그 원인을 조사하도록 할 수 있다. 다만, 「통신비밀보호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통신사실확인자료에 해당하는 자료의 제출은 같은 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8조의7(이행강제금)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제48조의4제3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따르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하는 경우 또는 사업장 출입 및 조사를 방해하거나 거부 또는 기피하는 경우에는 이행기한을 정하여 시정명령의 이행, 자료의 제출 또는 조사 협조를 다시 명령할 수 있으며,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이행기한이 지난 날부터 1일당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일 평균매출액의 1만분의 3의 범위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매출이 없거나 매출액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이행기한이 지난 날부터 1일당 200만원의 범위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② 이행강제금의 부과·납부·징수·환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이행강제금의 부과·징수에 관하여는 「행정기본법」 제31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에 따른다.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징수 또는 채납처분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6. 3. 31.]

[시행일: 2026. 10. 1.] 제48조의7

- 셋째, 개정안은 매출액 산정이 곤란할 경우 이행강제금의 1일당 상한을 100만원으로 정하고 있는데, 이행강제금을 도입하자는 다른 개정안들⁵⁾에서는 이를 200만원에서 500만원까지 다양한 수준으로 정하고 있으므로, 유사 입법례 등을 참고하여 적정 수준을 결정할 필요가 있음.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전기통신사업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등에서는 매출이 없거나 매출액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이행기한이 지난 날부터 1일당 200만원의 범위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국세기본법」에서는 1일당 500만원의 범위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문 의 처
02)6788-5104

5) 한정애의원안(의안번호 2216800), 김용만의원안(의안번호 2216813), 박범계의원안(의안번호 2216848), 한창민의원안(의안번호 2218220)